

상속재산분할협약서

0000년 00월 00일, 피상속인 0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아래에서 서명날인한 공동상속인 000, 000, 000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에 위치한 아래의 토지 및 건물은 000의 소유로 한다.

(1) 토지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㎡

(2)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
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100㎡

2층 100㎡

2. 상속재산 중 00시 00구 00동 00에 위치한 아래의 토지는 000의 소유로 한다.

토지의 표시 : 00시 00구 00동 00 대 000㎡

위 합의는 당사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, 그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, 기타 의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.

0000년 00월 00일

공동상속인 : (인)

주 소 :

공동상속인 : (인)

주 소 :